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77 발의연월일: 2020. 8. 14.

발 의 자 : 한병도·김민석·김민철

박재호 · 김영배 · 김승원

송기헌 · 박상혁 · 이상헌
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'치안정보'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.

이에 현행법상 '치안정보'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'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'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). 법률 제 호

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"치안정보"를 "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경찰의 임무) 국가경찰	제3조(국가경찰의 임무)
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치안정보</u> 의 수집·작성 및 배	4. <u>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</u>
至	<u>방과 대응 관련 정보</u>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